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02

발의연월일: 2024. 6. 14.

발 의 자:이병진・이재관・이연희

송옥주 · 임호선 · 윤후덕

이워택 • 권칠승 • 강유정

한민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생태계 보전과 관리를 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을 두어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기술개발, 해양생태계에 관한 교육·홍보 실시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해양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의 증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3월 국제연합(UN)이 2030년까지 공해를 포함한 전세계 바다의 30퍼센트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제해양조약을 제정하기로합의함에 따라,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동참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지정·관리되고 있는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확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 하나로 해양보호구역과 시

·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 확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7호 신설).

법률 제 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해양보호구역 및 시·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 확대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생태			
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			
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u><신 설></u>	7. 해양보호구역 및 시·도해양		
	보호구역의 지정 확대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